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19 발의연월일: 2021. 3. 16.

발 의 자:이상민·기동민·김경협

김교흥 · 김민기 · 김홍걸

박성준 • 윤미향 • 정춘숙

홍익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용도로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본격 화될 전망이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지원 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 설). 법률 제 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제8조(기금의 용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의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
	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